예 산 총 칙

202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75,760,339	28,788,017
일반회계	560,524,906	28,026,245
특별회계	15,235,433	761,772
기타특별회계	15,235,433	761,77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400	7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64,472	53,224
수질개선특별회계	2,911,158	145,558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554,759	127,738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90,990	24,550
기반시설특별회계	160,850	8,043
지하수관리특별회계	561,974	28,099
주차장특별회계	7,489,830	374,49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음.

제 5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6,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조직변경조례(안)이 동일 회기내에서 동시에 의결되었을 경우 조직개편에 맞게 예산서를 개편·운용할 수 있다.

※ 의존재원 표시
국고보조금→국, 균특보조금→균, 기금보조금→기, 시비보조금→시, 특별교부세→교, 특별조정교부금→특